

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(제4조 관련)

1.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

가.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

나.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

다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

라. 지급대상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

마. 삭제 <2025. 6. 2.>

바. 비료의 보관 등에 있어 「비료관리법」 제19조의2제1항을 준수할 것

사. 농약 및 가축분뇨의 배출 등에 관하여 「물환경보전법」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

아. 하천수의 사용·관리(농업용도에 한정한다)에 관하여 「하천법」 제50조제1항, 제50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·제3항을 준수할 것

자. 지하수의 개발·이용에 관하여 「지하수법」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, 제13조제1항,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을 준수할 것

차. 퇴비·액비에 관하여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고,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·단서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및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퇴비·액비를 사용하며, 액비의 살포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준수할 것

카.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 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. 다만,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타. 「식물방역법」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

2. 제1호에 따른 이행의무의 세부기준 및 확인·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